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급증에 따른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폭 감경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증(‘전자사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전자사증의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중 “신청”을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1을”을 “2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을”을 “2를”로 한다.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2. 제8조의2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입국신고서 (외국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 입국 외국인용)

ARRIVAL CARD 入國申告書 (外國人用)		漢字姓名	
Family Name / 姓		Given Name / 名	
		☐ Male/男 ☐ Female/女	
Nationality / 國籍	Date of Birth / 生年月日(YYYY-MM-DD)		Passport No. / 旅券番號
Home Address / 本國住所		Occupation / 職業	
(Tel :)			
Address in Korea / 韓國內 滯留豫定地 (Tel :)			
Purpose of visit / 入國目的		Flight (Vessel) No. / 便名・船名	
☐ Tour 觀光 ☐ Business 商用 ☐ Conference 會議 ☐ Visit 訪問 ☐ Employment 就業 ☐ Official 公務 ☐ Study 留學 ☐ Others 其他 ()		Port of Boarding / 出發地	
Signature / 署名		Official Only 公用欄	
		체류 자격 B1 B2 체류 기간 015 030 090 03M	

(제주특별자치도 입국 외국인용)

JEJU ARRIVAL CARD 濟州 入國申告書 (外國人用)		漢字姓名	
Family Name / 姓		Given Name / 名	
		☐ Male/男 ☐ Female/女	
Nationality / 國籍	Date of Birth / 生年月日(YYYY-MM-DD)		Passport No. / 旅券番號
Home Address & contact person / 本國住所・連絡人		Company Name / 職場名	
(Tel :)		(Tel :)	
		Position / 職位	
Address in Korea / 韓國內 滯留豫定地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in Korea / 國內緣故人	
(Tel :)		(Tel :)	
Period of stay / 滯留期間		Companion / 同伴 (persons) / (名)	
		Accompanied family / 家族 (persons) / (名)	
Purpose of visit / 入國目的		Flight (Vessel) No. / 便名・船名	
☐ Tour 觀光 ☐ Business 商用 ☐ Conference 會議 ☐ Visit 訪問 ☐ Employment 就業 ☐ Official 公務 ☐ Study 留學 ☐ Others 其他 ()		Port of Boarding / 出發地	
Signature / 署名		Official Only 公用欄	
		체류 자격 B1 B2 체류 기간 015 030 090 03M	

120mm(가로)×80mm(세로) 인쇄용지(OCR급) 105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1.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2. 제8조의2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